

X- I 예조판서(禮曹判書) 대제학(大提學)증사의정(贈司議政) 시(諡) 문숙공(文肅公) (일상; 一相)신도(神道)비명(碑銘)

(소재지; 가평군 상면 태봉리)

유명 조선국 정헌대부 예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 지의금부 춘추관 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도총관 동지 경연사 증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우의정 겸 경령 경연사 감 춘추관사 시 문숙(文肅) 이공 신도비명 병서 대광보국 승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겸령 경연사 감 춘추관사 박세채(朴世采)는 글을 짓고

자헌대부 의정부 우참찬 조상우(趙相愚)는 글을 쓰고

가선대부 이조참판 예문관 제학 김창협(金昌協)은 전액(篆額)을 하다

고 대중백(大宗伯) 태학사(太學士), 연안 이공(延安李公)은, 휘(諱)가 일상(一相)이요, 자(字)가 함경(咸卿)이며, 호(號)는 청호(靑湖)이다. 황조(皇朝: 明)의 의종(毅宗) 원년에, 알성문과(謁聖文科) 제 4명으로 합격하였으니, 우리나라 인조대왕의 6년에 해당한다. 그때에 조부 문충공(文忠公)은, 방자 단규(端揆)로 있었고, 아버지 문정공(文靖公: 明漢)은, 학사에서 남양(南陽) 부사로 나가 있었다.

공의 나이 겨우 열 일곱 살이었으니, 국조(國朝)가 열린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바였으므로, 온 세상이 부러워하여 칭송하였다. 그러나 공은 소년 등과(少年登科)가 불행하다 하여, 일체 벼슬을 안하고, 문단고 들어앉자, 경전과 역사책만 읽었고, 이공(二公)도 도와서 성취케 하였다. 그 동안 비록 괴원(槐阮: 承文院) 한원(翰苑: 예문관) 옥당(玉堂: 홍문관)의 선임(選任)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원치 않았다.

5년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설서(說書)를 제배(除拜)하여, 검열(檢閱)로 옮겨, 봉교(奉敎)에 이르러, 전적(典籍)에 올랐고, 병조좌랑 부수찬(副修撰)에 전직되어, 병자(丙子)년에 정언(正言)을 배수하였는데, 규론(糾論)함에 귀근(貴近)을 꺼리지 않았다. 공이 아뢰기를 「국사가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특별히 인재를 견발(甄拔: 拔擢)하여, 완급(緩急)에 대비하고, 죄적(罪籍)에 있는 사람도, 서용(敍用)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께서 엄한 교지를 내리자, 공은 혐의를 파하였으나, 곧 이어 또, 대분발(大奮發), 대진작(大振作)을 청하였다. 그러나 유념하고 헤아려 처리하겠다는 비답이 내려, 거듭 전하의 양처를 촉구할 즈음에, 북로(北虜)가 강을 건넜다. 공은 상께서 당일 정전에 납시어, 군신들을 책려하여, 전수(戰守)의 계책을 숙의케 하여, 후회를 남김이 없도록

하기를 청했으나, 임금은 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때에는 이미 오랑캐의 사신을 물리쳐 끊었는데도, 아직도 예답(泄沓)을 일삼으므로 공의 말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수찬으로 옮겨서는, 동료들과 함께 상차(上筵)하여, 사심을 버리고 성실에 힘써야 한다는 말로 극진하였고, 헌납(獻納)으로 전보되어서는, 간장(諫長: 大司諫)인 윤황(尹滄)과 더불어, 제사(諸司)와 외방(外方: 지방)의 용비(冗費)를 절약하여, 군비에 충당할 것을 청하였다. 그대에 조정에서는, 형편을 알아본다는 핑계로, 다시 오랑캐와 통래(通來)코자 하여, 공은 강개하게 쟁집(爭執)을 창론(倡論)하니, 사간 정태화(鄭太和)가 기뻐하지 않았으나, 공은 또 아뢰기를 「전번에 적로(賊虜)가, 참호(僭號)를 써서 글을 전했으니, 다행히 전하께서赫然(赫然)히 분발하시어, 엄한 말로 분명하게 물리치시고, 팔방에 아뢰시며 천조(天朝)에 아뢰었으니, 이는 참으로 위(危)를 안(安)으로 돌리는 대전기(大轉機)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몇 달이 채 못되어서, 횡의(橫議: 이의(異議))가 봉기(蜂起)하여, 나라에서는 사람을 차출하여, 서자(書字)를 보내려 하니, 일 처리하는 것이 의혹스럽습니다. 이는, 혹 아래로 우리 백성들을 속이고, 위로 황조(皇朝) 저버림이 아니되겠습니까?」 하여 사의(辭意)가 정대하니 듣는 사람마다 탄복하였다.

그해 겨울에, 노적(虜賊)이 대대적으로 쳐들어오니, 임금은 남한(南漢)으로 행행(行幸)하셨고, 공은 어가를 따랐다. 마침 곧 강도(江都)로 옮긴다는 말을 듣고, 먼저 출발하여, 모부인 박씨의 위질(危疾)을 잠깐 위문하고, 바로 성하(城下)에 당도해 보니, 상께서는 성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 성문은 닫혀 있었다. 심지원(沈之源)등과 함께 방황하며, 체읍(涕泣)하다가 부득이 사잇길로 강도의 관아에 의지하였었다.

이듬해 상께서는 성을 나왔고, 조금 후에 공은 모부인 상을 당하였다. 대간(臺諫)은 미처 집적(執鞫; 扈駕)치 못한 사람을 추론(追論)하였고, 동시에 척화(斥和)한 제신들의 죄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공의 이름도 그 안에 끼여 있어, 상께서는 영암(靈岩)으로 멀리 귀양가라고 특명을 내렸으나, 다시 위원(渭原)으로 이배(移配)되었다. 공은 슬픔을 머금고 수 천리를 유배되어 숨어 지냈으나, 능히 이리자승(以理自勝)하여, 조석으로 곡읍(哭泣)한 시간을 제하고는, 성현의 경전(經傳)에 힘을 기울였고, 더욱이 회암(晦菴: 朱子)의 유서(遺書)를 부지런히 송습(誦習)하였으며, 시사(時事)를 생각하여 답답해하였고, 무료할 때에는, 간혹 글도 지어 심회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복을 벗자 몽유(蒙有)되었는데, 문정공이 그때 천관(天官: 이조판서)이 되었기에, 공은 불모로 심양(瀋陽)에 들어가게 되었다. 돌아오자마자 직강(直講)에 복직되어, 교리

를 거쳐, 얼마 후 김제군(金堤郡)을 맡아서 나갔다가, 문정공의 상을 당하였다. 복을 벗으니, 검상(檢詳)과 사인(舍人)에 제수되어, 사간 겸 필선(弼善)으로 옮겼는데, 궁궐 보수에 참여한 공으로, 통정계에 오르고, 조금 후에는 금성현(錦城縣)을 맡아 나갔다가, 오래지 않아 버리고 돌아오니, 마침 인조께서 승하하셨다.

공조참의를 거쳐 동부승지로 옮겼고, 우부승지에 올라, 조금 후에 예조참의를 제수 받았고, 정원으로 다시 돌아와, 청음(淸陰) 김문정공(金文正公)을 만류하여, 신화(新化)에 보탬이 되게 하고자 청하였으며, 이어 또 상소하기를 「유계(兪槩)의 일을 이미 가납치 않으셨고, 또 송시열(宋時烈)의 진언에 답하신 바가, 화평한 기상을 잃음이 많아, 포용의 도량에 흠이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였으며, 또 효사(孝思)를 조금만 억제하고, 성궁(聖躬)을 보양하시어, 여러 신하들의 바램에 부응할 것을 청했는데, 뜻이 간절하고 독실하여, 우비(優批)를 내린 후, 거듭 전교하기를, 먼저의 소에서 「너의 유정(有情)을 나는 심히 가상하게 여기 노라」 하였으니, 대개 상께서는 잠저(潛邸)에 있을 때부터, 공의 현명함을 알고 있었기에, 개납(開納)함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공이 배사(拜謝)하고, 또 진언하기를 「이제부터는 천변(天變)이 매우 혹독할 것이니 일의 기미를 예측키 어려울 것입니다. 민을 바는 성명(聖明)뿐입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왔는데, 그때에 김자점(金自點)이 곧 북사(北史:淸使)와 연계하여, 청음(淸陰)등 제현에게 원한을 풀려고, 버리고 있었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병조 참의와 대사간으로 옮겨, 민심을 진정할 도리를 소론(疏論)하였고, 이어 장법(章法)을 엄명(嚴明)히 하여, 무너진 기강을 진작시킬 것을 청하였다. 우승지로 돌아와, 홍무적(洪茂績)이 일을 논하다가, 견책하여 처벌을 받음은, 마땅치 못함을 소진(疏陳)하니, 상께서 바로 사대(賜對:인견)하고 위유(慰諭)하였다. 형조참의를 거쳐 간원(諫院)으로 다시 와, 자점(自點)의 역옥(逆獄)을 다스림에 참여하였는데, 정의를 유지하기에 힘썼고, 가선계(嘉善階)에 올라, 부제학 겸 비변사 당상(備邊司 堂上)을 배수하여서는, 동료들과 함께 미재(弭災)와 소화(召和)의 계책을 아뢰었으며, 도승지로 옮겨서는, 거주(舉主:천거인)의 연좌법(延坐法:진좌법)을 거듭 밝힐 것을 청하였다.

대사성 겸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를 거쳐, 대사헌을 배수하였는데, 금리(禁吏)에 뇌물을 받은 자가 있어, 조사를 하였으나 불복하니, 장령 서원리(徐元履)가 원통히 여겨, 뇌물을 준 자까지, 끝까지 다스리려 하자, 공이 이르기를 「그렇게 하면 금리로 하여금, 더욱 교만케 하여, 함께 풀려나기를 바라게 될 것이다」 하니 원리(元履)가 공이 사정을 갖고 있는 줄로 의심하고,

계사를 올려 논척(論斥)하니, 임금이 그 말을 받아들여, 삭직(削職)을 명하였다. 얼마 안되어 병조참판으로 서복(敍復)되었고, 부개(副价:부사)로 차출되어, 연산(燕山:연경)에 다녀왔으나, 귀탁(歸橐)은 텅 비어 있었다. 복명하자 좌윤(左尹) 겸 동지경연(同知經筵)을 도배(道拜)하였는데, 계사를 올리기를, 「신이 이번 걸음에 저들의 형세를 가만히 살펴보니, 전일보다는 크게 달라진 듯하였습니다. 청컨대 역설(譯舌)을 보내서 적정(敵情)을 밀탐케 하십시오」 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 이조참판을 거쳐, 다시 대사헌이 되어, 경연에 입시(入侍)하고 있는데, 임금이王安석(王安石)의 오국(誤國)을 천수(天數)로 돌리자, 공이 이르기를 「그것은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송 효종(宋孝宗)은 유위(有爲)한 임금이지만, 마침 금국(金國)에 틈이 없어, 끝내 중원(中原)을 회복(恢復)하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한스러운 일입니다」 하였다. 그때에 시(詩)의 박벌(薄伐)에 대한 일을 강하고 있었는데, 상께서 이르기를 「내정이 다스려진 연후에야 밖으로 오랑캐를 물리칠 수 있는 바 지금의 급무는 인심을 얻는데 있다」하여, 공이 답하기를 「그 요체는 역시 인재를 얻는데 있는데, 문무를 겸한 길보(吉甫)가, 어찌 유독 주(周)나라 때에만 나온다 하겠습니까? 다만 선왕(宣王)이 잘 썼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근본을 추구해 보면 역시 효우(孝友)에 있었던 것이니 장중(張仲)의 일을 생각치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칭선(稱善)하였다. 대개 임금이 바야흐로 규회(規恢)에 뜻을 두고 있었기에, 공의 전후(前後)진언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예문관 제학을 겸하였다가, 다시 옥당의 장(長)이 되고, 실록청 당상(實錄廳 堂上)을 겸하여, 인조실록 편수에 참여하였으며, 경기도 관찰사로 나갔다가, 이조참판으로 돌아왔다. 그때에 상께서는, 뜻을 가다듬어 다스림을 도모하여, 산림의 유현(儒賢)들을 다시 부르고, 우재(尤齋) 송시열(宋時烈)을 천관(天官:이조판서)에 탁용(擢用) 하였는데, 송공이 공의 도움을 계청(啓請)하여, 공도 협심 상조하니, 조야(朝野)가 일컬었다. 이에 앞서 윤휴(尹鑄)가 포의(布衣)로 성명(盛名)을 얻고 있음을 공은 마음속으로 기뻐하지 않아, 문충공이 그의 선인에게 속임을 당한 일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도 아마 그 아비에 그 자식이 아니겠는가?」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송공이 외의(外議)를 따라 7계(階)를 올려서 쓰려고 하여, 공이 그 불가함을 역설하였으나, 송공이 듣지 않았다. 뒤에 윤휴가 치패(致敗)하자, 사람들은 공의 선견(先見)에 감복하였다. 오래지 않아 양관(兩館)의 대제학에 임용됐는데, 공은 제수의 명을 듣고 추연(秋然)히 상소하여 사직하기를 「신의 조부가 선묘조(宣廟朝)에 다행히 문묵(文墨)으로 지우(知遇)를 받았고, 대를 이어 문단의 주맹

(主盟:맹주)이 되었으나, 신의 아버지도 일찍이 불안해 하였는 데, 신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하고 다섯 번이나 끊임없이 상소하였으나, 우비(優批)만 내리고 윤택치 않아, 공은 비록 출사는 하였지만, 마음은 하루도 편안치 못해 하였는데, 판서 조경(趙綱)이 탄식하기를, 「문형(文衡:대제학)을 사양함이 이렇듯 하였음은, 옛날에도 듣지 못했던 바다. 이공(李公)은 참으로 현인이로다」 하였다.

효종이 승하하니, 빈전도감 당상(殯殿都監堂上)에 차출되고, 일을 마치자 가의계(嘉義階)에 올라, 다시 아전(亞銓:이조참판)을 배수하였으나, 누차 사양하여 예조로 옮겨졌는데, 문형만은 또다시 간절하게 사양하였다. 대개 공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의 집안이 귀(貴)로 계승하여, 군중(群從)과 형제들이, 모두 영예로운 자리에 나가 있었기에, 한결같이 모든 청요직(淸要職)을 힘써 사양하였던 것이다. 때마침 정언 이지익(李之翼)이, 전라 수사(水使) 이동현(李東顯)이 배에 쌀을 실어다가 아전(亞銓)의 처소에 일제히 보냈다 하면서, 체포하여 국문할 것을 청하여 윤택가 내렸다. 이보다 앞서 동현의 서신에 「퇴선(退船)을 이미 팔아 버려져 부응(副應)해 드리지 못하겠다」 하여 공이 이상하게 여기고, 시임(時任:현임)인 이응시(李應蓍)에게 전하게 하였더니 이공도 받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함께 공문을 발송하여 그 연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변응립(邊應立)이란 자를 시켜 서신을 전하게 하였는데 당초에는 그런 거짓을 말했을 것으로는 여기지 않았더니 이번에 살펴보니 봉서(封書)안에 과연 공의 이름을 도용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응립이 조금 후에 붙들려 왔기에, 근거를 캐어보니, 형적(形迹:혐의)이 양영남(梁潁南)에게까지 미쳐, 형신(刑訊) 후 도배(徒配)에 처하였다. 그때에 공은 효종실록의 편수를 맡고 있었는데, 오래도록 인죄(引罪:인책) 중에 있으니, 총재관(總裁官) 이경삭(李景奭)이 걱정되어, 묘당에 하순(下詢)하여 처하기를 청하니, 상께서 이르기를 「이모(李某)가 만일 참으로 청탁이 있었다면 어찌 그 서신을 응시(應蓍)에게 보내려 했겠는가?」 하였다, 만약을 몰라, 호·공(戶·工) 양조의 낭관(郎官)으로 하여금, 쌀을 실은 배의 허실(虛實:진위)을 핵실하라 하였더니, 금년에는 수영(水營)의 배가, 경강(京江)에 온 일이 없었다고 귀보(歸報)하여, 다시 대신들에게 의논하라 명하니,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아뢰기를 「만일 동현(東顯)을 문초하려 한다면 이모(李某)는 반드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또 지금 대론(臺論)도 허위의 일로 돌리고 있으니 물문(勿問)에 붙이기를 청합니다」 하여 임금이 따랐으나, 공은 상소 대죄(待罪)하고, 삭직(削職)을 청하였는데, 비답(批答)하기를, 「내가 이미 통촉하였으니 경은 안심하고 사직치 마오」 하였고, 바로 승정원에 명하여 불러오도

록 하니, 공은 마지못해 명에 따랐다. 편수의 일이 끝나자, 자헌계(資憲階)에 오르고, 예조판서를 제수하여, 공은 문형까지 합하여, 사퇴하였지만 윤허치 않았다.

공조판서로 옮겨서, 왕대비(王大妃)의 옥책(玉冊)을 지었으며, 정헌계(正憲階)에 올라 실록을 태백산(太白山)에 봉안(奉安)하고 돌아올 때, 성밖에 당도하여, 논사자(論事者)가 지평(持平)을 배수하였으나, 인피(引避: 피혐)하였음을 듣고, 공도 다시 진소(陳疏)하여 대죄(待罪)하니, 비답(批答)하기를 「이미 변명이 된 일을 너무 혐의롭게 여길 것 없으니, 사직치 말고 마음 편히 들어 오오」 하였다. 이것은 대개 지익(之翼)이, 그 동안 호막(糊膜)의 막좌(幕佐: 도사)로 나가, 호인(湖人) 변극휴(卞克休)를 사주(使喚), 상소하여, 공을 역공(力攻)케 하고, 지금의 피사(避辭)에서도, 동현의 죄목을 불문에 붙인 것을, 오로지 공이 권귀(權貴)인 까닭이라 돌리고, 아울러 제공이 봉비(朋比: 봉당)를 지어, 사실을 은폐하여, 중외를 현혹할 계책을 꾸미고 있다고 공격하였던 때문이다. 시간원에서 지익의 출사(出仕)를 계청하니, 유계(兪槩)가 옥당에 있으면서 상소하기를, 「헌신(憲:헌관)이 조론(朝論)이 이미 결정된 뒤에도, 오히려 미유(迷尤: 미혹 유망)하고 있으니, 협세(挾勢)한 바가 없다고 한다면, 필시 집요(執拗)한 것입니다. 하물며 간원의 처치가 공의(公議)를 이처럼 무시함은 조가(朝家:조정)의 거조(舉措:처사)가 아닐 것입니다」 하였다. 지익이 재피(再避)하면서 처음으로 보내온 쌀 몇 포, 배 몇 필의 실수(實數)를 거론하였고, 또, 「배 안에는 그 일가 되는 사람의 귀촌(歸餽)을 실었기에, 직접 본 사람이 많았었다」고 말하니, 대신들도 이제 와서는 핵실하여야 한다 하여, 드디어 영남(嶺南)과 이졸(吏卒)까지를 아울러 체포해 오니, 공도 그들과 똑같이 금부(禁府)의 신문(訊問)을 받겠다고 소청하였으나, 불허하였다. 동현(東顯)이 신문에 대답하기를 「관을 실은 배는, 본래 책맹(舩艫)을 실었으며, 고양(高陽)에서 관을 내려주고, 바로 돌아갔었다」 하였고, 이졸들을 문초해봐도 별다른 지적이 없었으며, 또 수영의 장부를 조사해봐도, 모두가 피사(避辭)와는 맞지 않아, 결국 지익을 나문(拿問)하라 명하였는데, 그의 공사(共辭: 공초한 말)에서도 목격자의 성명을 거론치 않았고, 홍명하(洪命夏)를 심하게 공격했는데, 홍공이 공을 가장 억울하게 여겼고, 또 판의금으로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 뒤에 임금이 수상 정공(鄭公)에게 이르기를 「영남(嶺南)이 누차 엄한 신문을 당하여 시종을 자백하였으니, 그것이 이모(李某)의 수찰(手札)이 아니었음은 분명하다」 하고, 영남만 북도로 이배(移配)케 하고, 여타는 모두 방석하였다. 그때에 공은 이미 동관(冬官:공조판서)을 사직하고 있던 때였다. 처

음 영남이 피국(被鞠)되었을 때에, 국구(國舅) 김우명(金佑明)이 비밀리에 사람을 시켜, 동정을 살피게 했는데, 홍공(洪公)이 사람을 넣어, 까닭을 물은 일이 있었다. 이에 국구가 소장(疏章)을 올려 자변(自辯)하고, 크게 홍공을 지척(持斥)하였는데, 그것은 대개 국구는 논사자(論事者)와 척분이 가까웠고, 또 공을 둘러싼 한 때의 사류(士類)들을 깊이 미워하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금의 마음도 조금 변하여, 언로(言路)에 당한 사람을 옳게 여기고, 헌관을 나문(拿問)한 일을 허물하였으며, 여론(餘論)도 분분하였는데, 유공(兪公)이 이른바 험세한 바가 있다 함이 이에 이르러, 징험(徵驗)이 된 셈이니, 식자(識者)들은 외척이 차츰 전횡(專橫)함을, 더욱 걱정하게 되었다. 최후에는 우재(尤齋) 송공이 이를 논하기를, 「문로공(文潞公)은 비록 등롱금(燈籠錦)이 있다는 비방을 받았지만 의연(依然)히 성송(盛宋)의 명신이 되어 있는데, 하물며 당초부터 등롱금이 없는 사람에 있었서라?」 하였는데 듣는 이마다 옳은 말이라 하였다.

공은 드디어 양주(楊洲)의 풍양(豐壤)으로 나아가, 진정(陳情)의 소를 올렸으나, 우비(優批)만 내리고 윤택치 않아서, 다시 병을 핑계하고, 문형을 비롯한 모든 소임을 사양하였는데, 오랜 뒤에야 윤택이 내려졌다. 이로부터도 우참찬, 대사헌, 한성 판윤, 겸직으로 동지 경연사 지의금부사, 춘추관사를 지내고, 호조판서에서 예조판서가 다시 되어, 병오(丙午:1686)년 정월 초하루에, 병으로 성동(城東)의 구제(舊第)에서 졸(卒)하니, 수는 55세이다. 마침 일찍이 시약(侍藥)의 공로가 있어, 품계가 올라야 하였기에, 대신이 은졸(隱卒)의 예절을 베풀기를 청하여, 의정부 우의정이 특증되었다. 가평(加平) 조종현(朝宗縣)의 선릉(先壟)에 장사지냈다가, 22년 후인 정묘(丁卯)년에, 문충공의 묘후로 개장하였다.

이씨는 당(唐)의 중랑장(中郎將) 무(茂)에서 계출(系出)하였으니, 실은 농서인(隴西人)인 것이다. 아조(我朝)에 들어와, 휘(諱) 석형(石亨)은 삼장 장원(三場 壯元)하였고, 좌리공(佐理功)에 책훈되어, 연성부원군(延城府院君)에 봉해졌는데, 공에게는 6세조가 된다. 증조 휘 계(啓의 口대신 山)는 증 영의정이요, 이분이 문충공(文忠公), 휘(諱) 정귀(廷龜)를 낳으니, 좌의정까지 올랐고, 문장과 덕업으로 일대의 명보(名輔)가 되었다. 문정공(文靖公) 휘(諱) 명한(明漢)은, 벼슬은 총재(冢宰:이조판서)에 그쳤으나, 풍류가 넉넉하여 선미(先美)를 잘 계승하였다. 박부인(朴夫人)은 반남(潘南)의 대족(大族)인 우참찬 동양(東亮)의 따님인데, 지성(至性)과 고식(高識)으로 일컬어졌다. 공은 완산 이씨(完山李氏) 영의정 성구(聖求)의 따님을 선취(先娶)하였는데, 지조가 정고(貞固)하여 오랑캐가 강도(江都)를 함락하자, 칼을 뽑아 자결하여 정

려가 내렸는데, 1녀를 두어, 승지 김만균(金萬均)에게 출가하였다. 이어 문화유씨(文化柳氏) 군수 인성(仁聲)의 따님을 재취하였는데, 부덕이 겸비하여 공을 섬김에, 한번도 비의(非義)로 간섭한 일이 없었으며, 여러 아들들을 가르치고 훈계함을 더욱 근심히 하였다. 3남 2녀를 두었는데, 아들 성조(成朝)는 군수요, 중조(重朝)는 조물(早歿)하였으며, 해조(海朝)는 진사이다. 장녀는 현령 조헌주(曹憲周)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원몽은(圓夢殷)에게 출가하였으며, 측출(側出)도 1남 2녀가 있는데, 남은 우조(羽朝)이다. 김만균은 1남 3녀를 두었는데, 남은 진옥(眞玉)이요, 성조(成朝)는 4남 3녀를 두어, 남은 우신(雨臣), 주신(舟臣), 여신(礪臣), 매신(梅臣)이며, 해조(海朝)는 2남 1녀를 두어, 징신(徵臣), 숭신(崇臣)이며, 조헌주는 5남 3녀를 두었는데, 남은 하중(夏中), 하성(夏盛), 하망(夏望), 하중(夏鍾), 하정(夏挺)이요 원몽은은 1남 2녀를 두었는데, 남은 명설(命嵩)이며, 우조(羽朝)는 4남 2녀를 두어, 남은 호신(虎臣), 규신(奎臣), 용신(龍臣), 웅신(熊臣)이다.

공은 위인이 엄중 평우(宏友)하고, 기운(氣韻)이 준상(俊爽)하여, 보는 이마다, 바로 대인(大人)임을 알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천성이 민오(敏悟)하였는데, 민응건(閔應騫)은 사계(沙溪) 김선생의 문제자로, 엄의(嚴毅)하고 법도가 있어, 문정공 이공에게 나가 소학(小學)을 배우게 하였는바, 공은 게으름 피움 없이 잘 복옹(服膺)하여, 벌써 사친(事親), 경장(敬長)의 도리를 알았었다. 커서는 기옹(畸翁) 정공(鄭公)에게 수업하여, 문학이 날로 진취하였다. 내행(內行)도 독실하여, 문충공과 문정공을 효근(孝謹)으로 섬겼으며, 모부인께서 병이 위독하여, 생 배(生梨)를 항상 먹고 싶어하시던 것을, 구해드리지 못하였음을 생각하여, 공은 종신토록 참아 생 배를 먹지 못하였다. 양친의 상을 당한 후로는, 소복(素服)으로 일생을 마쳤고, 문정공이 만년에 상란(喪亂)을 당하여, 선묘(先墓)에 비를 못 세운 것을 한탄하니, 공이 그 뜻을 받들어 이루었으며, 막내 고모가 늙고 가난하여, 생존해 있으니, 날마다 궤양(饋養)하였고, 중씨(仲氏), 숙씨(叔氏)가 일찍 별세하였음을 서럽게 여겨, 하나는 작은 아들을 주어 뒤를 잇게 하였고, 하나는 문충공의 옛집을 나눠주어, 고과(孤寡)로 하여금, 생업을 잇게 하였다. 그리하여 여러 형제들과는, 화락함이 간격이 없었으나, 혹 실수가 있으면 엄하게 꾸짖었다. 평소에 집사람들의 살림 속은 물론 일이 없이, 다만 죽정(竹亭) 한 채를 짓고, 손님이 오면 반드시 술을 내 오라 하여, 시를 읊으며 자적(自適)하니, 사람들이 그 청치(淸致)에 감복하였다.

임금을 섬기에는 불기(不欺)를 위주로 하였고, 더욱이 풍채(風裁:풍절)로 자려(自勵)하여, 병정(丙丁)의 내홍(內訌)에는, 화의(和議)의 잘못을 극론하여,

귀양을 논하기에 이르렀으나, 뉘우침은 없었다. 난리를 치르고 조정에 돌아온 뒤로는, 마침 효종의 여치(厲治)로 선류(善類)들이 몰려드니, 공도 특별한 권우(眷遇)를 입어, 낙정(樂靜), 시남(市南), 창주(滄州), 기천(沂川) 등 제공과 함께 선후하여 잘 협력하였고, 오직 국제(國計)와 사론(士論)을 북돋기에 힘썼으며, 유현(儒賢)을 등용하는 일에도 많이 간여하였고, 지의(志義)도 잘 맞았었다. 공은 그때, 비록 노성(老成)으로 겸신(謙愼)하느라, 운용(運用)한 행적은 볼 수 없으나, 위로 돕고 아래로 영향을 미쳐, 일세의 의중(倚重)이 되었던 바는 볼 수가 있다. 기·경(己·庚) 이래로는, 점차 소장(消長)의 염려가 있어, 걱정을 숨기고, 깊이 탄식하면서, 미륵(彌綸)과 조호(調護)할 길을 생각코자 하였으나, 횡역(橫逆)을 당한 후로는, 더욱 구변(丘樊: 임천)으로 물러나가려는 생각이 간절하였는데,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임인년(壬寅年)에, 북사(北使:청사)가 영력제(永曆帝)의 피해(被害)를 알리자, 비분을 이기지 못하여 시를 지어, 우재(尤齋)에게 부치기를, 「백일(百日)은 서쪽 뜰에서 병장(兵仗:병기)을 물들이고 돌아갔나니, 중원(中原)의 소식에는 용안(龍顏)도 울었으리라. 충신 열사의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은, 응당 궁산(窮山)과 절해(絶海) 사이에 엉켜 있으려다!」 하였는데 사기(辭氣)가 격절(激切)하였다. 뒤에 우재도 화답(和答)하여 세상에 전승(傳誦)되었다.

명하기를

현운(顯允)한 대성(大姓)은 농서(隴西)에서 비롯했도다.

저현(樛軒)의 명세(鳴世)로 후손들 미혹(迷惑)치 않게 되었도다.

아름답다! 문충(文忠)은 성제(盛際)에 의형(儀刑:모범)이 되었도다.

문(文)으론 세사(世師)가 되고 덕으론 세비(世庇)가 되었도다.

태재(太宰:宰相)가 됨에 이르러서는 전무(前武)에도 빛이 되었도다.

공이 이어서 일어나니 단혈(丹穴)에서 나온 우인(羽人)이로다.

약세(弱歲:유년)에 책명(策名)함은 진고(振古)에 없었던 바로다.

능이 회장(晦藏)하여 경사(經史)를 탐구했도다.

대단(臺端)에 발붙였을 때에는 나라가 마침 굳세지 못했도다.

누차 충간(忠諫)을 올렸는데 사리(辭理)는 엄하고 의기는正大했도다.

아득히 저쪽 서새(西塞)에서는 오히려 풍운이 격양(激昂)했도다.

상란(喪亂)은 평정(平靜)이 되고 성주(聖主)는 그대로 위에 있게 됐도다.

기철(耆哲)을 우용(優容)하고 현유(賢儒)도 불러 들였도다.

오직 이 대의(大義)만을 숭상하고 부지(扶持)했도다.

공은 그 사리에 있으면서 조용히 하는 일 없는 듯 하였도다.

그러나 때때로 한 말씀씩 올림이 어찌 도움이 없었다 할손가?

그래서 총애도 받고 세상의 문맹(文盟)도 되었고도다.
 명을 듣자 두려울 뿐이었으니 어찌 담장을 댄돌 뿐이었으랴?
 일이란 더러 의외도 있나니 전전(輾轉)하며 더욱 어렵게 됐도다.
 법대로 안핵(按覈)하니 하나도 밝혀지지 않음이 없었도다.
 비유컨대 형벽(荊壁) 같거늘 무엇이 같고 닦을게 있다던가?
 사도(司徒)와 질종(秩宗)등 지위와 인망이 아울러 극진했도다.
 시종이 거의 여일하였으니 선인(先人)들에게 욕됨이 없으리로다.
 조종(朝宗)의 산록은 산도 높고 물도 깊도다.
 나는 큰돌에 명을 새기나니 치매(稚昧)를 신칙코자 함이로다.
 백세 뒤에라도 지나는 자 공경하도록
 숭정 기원후(崇禎 紀元後) 76년 계미 8월 일 세움.

(참고)

이일상(1612~1666)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이 연안(延安)이며, 자(字)는 함경(咸卿)이고, 호(號)는 청호(靑湖)이며, 이조판서 명한(明漢)의 아들이다.

인조 6년(1628) 17세로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으나, 어려서 벼슬을 하지 않고 공부에 열중하였다. 1633년 검열이 되고, 대교 정언을 거쳐, 헌납이 되었다가, 1636년 병자호란 때에는, 왕을 호종하지 못하고, 또한 화의를 반대한 척화신(斥和臣)으로서, 이듬해 탄핵을 받아 영암(靈岩)으로 귀양갔다가, 다시 위원(渭原)으로 이배(移配)되었다. 뒤에 남노성(南老星)들의 주장으로 풀려나, 인조 말년에는 사간에 올랐으며, 1647년에는 창덕궁 수리소도청(昌德宮修理所都廳)으로 공이 있다 하여, 당상관(堂上官)에 올랐다.

효종이 즉위하면서, 우승지에 발탁되어 총애를 입었으며, 이어서 대사간을 거쳐, 효종 3년(1652) 도승지가 되었으나, 탄핵받은 특진관(特進官) 윤강(尹絳)을 신구(伸救)하다가, 한때 파직되었으나, 홍무적(洪茂績)의 신구로 복귀하였다.

이어 부제학 대사간 대사성을 거쳐, 대사헌으로 있을 때, 범금자(犯禁者)를 남의 창탁으로 석방하였다는 탄핵을 받아, 한때 다시 관직을 삭탈 당하기도 하였다.

1654년 정조 겸 진하부사(正朝進賀副使)로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 후, 청나라의 실정을 보고하여, 효종의 북벌(北伐) 계획 수립에, 송시열(宋時烈)등과 함께 도움을 주었다. 곧이어 이조참판, 대사헌, 대사성, 등의 요직을

거쳐, 1656년에 부제학으로 실록 수정청 당상에 임명되어, 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의 편찬에 참여하고, 한때 경기감사로 나갔다가, 1659년 대제학에 올라, 문형(文衡)을 장악하였다.

남인 계열이 편찬한 현종실록(顯宗實錄)에서는, 학술이나 재능도 없는 주정꾼으로 평하고 있으나, 서인 계열이 편찬한 현종개수 실록에는,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明漢)와 함께 3대에 걸쳐 대제학을 지낸 것은, 수 백년 사이에 없었던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아들 해조(海朝)도 숙종조에 대제학을 지냄으로써, 4대가 모두 문병(文柄)을 잡았다. 저서로는 청호집(靑湖集)이 있으며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한국금석문대관 • 권 1; 연안 이씨 편 •

고려금석원장 진한용 발행, PP519~529 인용)

X-2 禮曹判書大提學贈司議政諡文肅公(一相)神道碑銘

(所在地; 加平郡 上面 胎封里)

有明朝鮮國正憲大夫禮曹判書兼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義禁府春秋館成均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同知 經筵事 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右議政兼領 經筵事監春秋館事諡文肅李公神道碑銘 并序

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 朴世采 撰

資 憲 大 夫 議 政 府 右 參 贊 趙相愚 書

嘉 善 大 夫 吏 曹 叅 判 兼 藝 文 館 提 學 金昌協 篆

故大宗伯太學士延安李公一相字咸卿號青湖當皇朝毅宗初元中 謁聖文科第四名實我 仁祖大王六年也時大父文忠公方位端揆父文靖公由學士出守南陽府公年甫十七殆 國朝以來所未有一世艷稱之乃公以少年高科爲不幸遂不仕一切閉門讀經史二公勗而成之雖間有槐院翰苑玉堂之選皆不顧也居五歲始拜說書移檢閱至奉教陞典籍轉兵曹佐郎副修撰丙子拜正言糾論不憚貴近又言國事至此宜特甄拔人才以脩緩急其在罪者亦可調敍 上有嚴旨公引避仍請大奮發大振作又 批以留念量處乃申白 殿下量處之際虜當渡河顧卽日 出御正殿策勵羣臣熟講戰守之策母貽後悔上亦不納蓋時已斥絕虜使而尙事泄沓公言如此移修撰同諸僚上筭極陳破私意務誠實之說轉獻納與諫長尹公煌請節楨諸司及外方冗費以補軍需會朝廷托以偵探欲復通虜公慷慨倡議爭執司諫鄭太和不說公又啓言頃者賊虜僭號馳書乃幸 殿下赫然奮發嚴辭明斥告諭八方咨奏 天朝此誠轉危爲安之大機也曾未數月橫議蜂起至欲差人送書舉措疑惑是不幾於下欺吾民上負 皇朝乎辭意正大聞者歎服其冬虜果大至 上幸南漢公從 駕會聞將移江都乃先生暫省母夫人朴氏危疾旋到城下則 上旣發還入城門閉矣與沈公之源等彷徨涕泣不得已由間路往依江都分司明年 上出城俄遭母夫人喪臺諫追論未及執鞫者時方治斥和諸臣罪公名亦在焉 上特命遠寬靈巖移配渭原公御?恤流竄數千里猶能以理自勝朝夕哭泣之暇仍得肆力於聖賢經傳尤喜晦庵遺書孜孜誦習痛念時事憤鬱無聊間或著文以見志服關蒙 宥文靖公時爲天官公遂入質于瀋陽比歸復直講校理俄出守金堤郡遭文靖公憂服闋薦拜檢詳舍人移司諫兼弼善以與修 關勞陞通政階尋出監錦城縣未幾棄歸而 仁祖禮陟矣由工曹參議移同副承旨陞右副尋除禮曹參議還政院請留清陰金文正公以補新化仍上疏言俞榮事旣未 虛納又荅宋時烈進言多失和平恐欠包容之量且靖少抑 孝思保養聖躬以副羣下心旨意懇萬 優抄後申教曰頃疏予甚嘉爾有情盖 上自在潛邸素知公賢故開納如此公拜謝進曰日今天變孔棘事機難測所恃者 聖明耳因垂涕而出時自點將因北使逞怨於清陰諸賢然也移兵曹參議大司諫疏論鎮定民心之道繼請嚴明臧法以

一振頹綱還右承旨疏陳洪茂績不宜以論事被譴 上卽賜對慰諭由刑曹參議復諫院與治自點送 獄務持正議陞嘉善階拜副提學兼備邊司堂上偕汴僚陳弭灾台和之榮移都承旨請申明學主延坐法歷大司成兼同知義禁府事拜大司憲禁吏有受賂者按治不服掌令徐元履寃之將軍究其賂者公謂是當使禁吏益驕欲並放焉元履疑公有私啓斥之 上累入其就 命削職未幾敘復兵曹參判充副价赴燕山歸橐蕭然復 命道拜左尹兼同知 經筵啓言臣於令行竊觀彼中形勢大異前日乞 命譯舌密探敵情 從之由吏曹參判復長憲府嘗侍 經筵 上欲以王安石誤國歸之天數公曰此恐不然然如宋孝宗可以有爲適值金國無釁遂不能恢復中原誠可恨也時講詩箴伐事 上曰內修然後可以外攘方今急務在於得人心公對曰其要亦在於得人才文武吉甫豈獨生於周時只是宣王能用之耳然若推其本又在於孝友張仲恐尤不可不念 上親善盖 上方志於規恢公之前後進言乃如此兼藝文館提學復長玉堂兼實錄廳堂上與修 仁祖實錄出爲京畿道觀察使還拜亞銓時 上銳意有爲復台山林儒賢擢尤齋宋公時烈天官宋公啓請公自助公亦協心相助朝野稱之先是尹鐸以布衣負盛名公心不喜引文忠公見欺於其先人事曰此胎成父子歟至是宋公欲循外議超七階進用公又力言不可宋公不聽及浚鐸敗人多服公先見未幾進兼兩館大提學公聞 命愀然疏辭言臣祖在 宣廟朝幸以文墨知 遇至於繼世主盟臣父亦嘗憂縮況臣安敢當五上章不已 優批不許公雖出謝其心未嘗一日安也趙判書綱歎曰辭文衡至此古所未聞李公其賢矣 孝宗升避差 殯殿都監堂上事竣陞嘉義階復拜亞銓累辭移禮曹復辭文衡益懇盖公自念家世踵貴羣說兄弟皆通榮籍由是一皆力辭請要馬會正言李之翼以全羅水使李東顯載米于舡並送亞銓所啓請拿問 允之先是東顯書言退舡已賣不克副公異之兵傳時任李公應著亦不受遂同發書問其故荅謂有邊應立者傳書初不料其僞今謹封內果用公名馬應立俄就捕根究跡到梁穎南乃刑訊徒配時公掌修 孝宗實錄久在引罪摠裁官李公景奭以爲憂請 詢廟堂處之 上曰李某若真有請托宜肯轉送其書於應著 乎試令戶工二曹郎覈米舡虛實歸對今年無水營舡到江者又 命議大臣領議政鄭太和言若問東顯李某必不敢出且今臺論歸虛請勿問 從之公陳疏待罪仍乞削職 批曰予已洞燭卿其安心勿辭施 命政院牌於公電勉承 命事竣陞資憲階拜禮曹判書辭並及文衡 不許移工曹以撰王大妣玉冊陞正憲階奉安實錄於太白山歸到城外聞論事者拜持平引避公復陳疏待罪 批曰以辨之事不必深嫌宜勿辭安心入來盖之翼間出佐湖幕喉湖人卞克休疏攻公甚力至是避辭專攻不問東顯罪目公以權貴而並斥諸公朋比壅蔽爲眩惑中外之計諫院啓請出俞公榮在玉堂上疏言憲臣於朝論既定之後猶且迷謬苟非有挾必是執拗況諫院處置不恤公議如是恐非 朝家舉措之翼再避始舉所送實茹米幾包布幾匹又言船中載其一家歸櫬人多目見者至是諸大臣亦曰可覈遂並拿穎南及吏卒等公疏請一體就理 不許東顯對獄言載櫬船卒用舡解櫬於高陽卽歸吏卒等考掠無異指又取營中文案勘覈皆與避辭相左遂 命逮問之翼其供辭不

舉目見者姓名又攻洪公命夏甚以洪公最冤公且判金吾也久之上謂首相鄭公曰穎南屢被嚴訊終始自服其非李某手札朋矣令移配北道他皆放釋時公已適冬官矣初穎南被鞠 國舅金佑明密使人覘察動靜洪公因人問之 國舅乃上章自忤深斥洪公蓋 國舅爲論事者近戚而深惡公一隊士類故耳由是 上意稍變而主言路者亦咎其遽問憲臣餘論紛然俞公挾者至是乃驗識者蓋以戚畹漸橫憂之最後尤齊宋公論此文潞公雖亦有燈籠錦之謗然潞公依舊爲盛宋名臣況其初武燈籠錦者耶聞者是之公遂轉往楊洲之豐壤上章陳情 優批不許內引疾申辭文衡諸任久而後始 許自是累歷右參贊大司憲漢城判尹兼同知 經筵知義禁府春秋館事戶曹判書還禮曹內以丙午正月朔疾卒于城東舊弟五十五會當以 侍藥勞陞資大臣請推隱卒典 特贈議政府右議政設葬嘉平朝宗縣先壟後二十二年丁卯改葬于文忠公墓淩系出唐中郎將茂實隴西人入我相有諱石享三場壯元策佐理功爲延城府院君於公爲六世祖曾祖諱啓 贈領議政是生文忠公諱廷龜後進位左議政文章德業爲一世名輔文靖公諱明漢官終蒙宰風流篤厚克繼先美朴夫人潘南大族右參贊東亮之女以至性高識稱公先娶完山李氏領議政聖求之女志操貞固虜陷江都引刀自決事 聞旋閭生一女適承旨金萬均繼娶文化柳氏郡守仁聲之女婦德深脩事公未嘗以非義干教戒諸子蓋謹生三男二女男成朝郡守重朝早歿海朝進士女長適縣令趙憲周次適元夢殷側出男一羽朝女二金萬均男一鎮玉女三成朝男四雨臣舟臣礪臣梅臣女三海朝男二徵臣崇臣女一曹憲周男五夏重夏盛夏望夏鍾夏挺女三元夢殷男一命高女二羽朝男四虎臣奎臣龍臣熊臣女二公爲人嚴重宏偉氣韻雋爽見者輒知其大人也幼性敏悟閔公應騫沙溪金先生門弟也嚴毅有法度文靖公令就受小學公服膺不忘已知事親敬長之禮既長質業于畸翁鄭公文學日進焉內行篤至事文忠公及文靖公孝謹母夫人疾欲思當生梨不得公遂不忍食及喪而親服素終其身文靖公晚遭喪亂恨不克樹碑先墓公繼志以成之有季姑窮老在堂日攻饋養痛仰牕早世一與少子爲後一分文忠公舊宅業其孤寡以及誥兄弟湛樂無間至或有失責厲加功素不問家人生產唯構一竹亭賓至必命酒哦詩以自適人服其清玫事君主於不欺尤以風裁自厲而丁之訐極論和議之非以之論謫而無所悔自經喪亂還朝會值 孝廟厲精善類彙証公又特被 卷遇乃克與樂靜市南滄州沂川諸公後先協力唯國計士論是扶及于儒賢登庸亦多與之志義相符公雖時已老成謙慎未見運用之跡其上輔下退爲一世所倚(의지할 의)重可見也已康以來漸有消長之虞亦必隱憂深欲思所以彌論調護自遭橫逆俞欲引退丘樊而不及遂壬寅年間后使告以 永曆帝被害不勝悲憤寄詩尤齊曰白日西郊彩伏還中原消息泣 龍顏忠臣烈士崩心慟應在窮山絕海間辭意激切後尤齊和之世皆傳誦銘曰

顯允大姓肇自隴西 樛軒之鳴俾後不迷 綺歟文忠儀于盛際 文爲世師德爲世庇 以泊太宰有光前武 公乃嗣興丹穴其羽 弱戚策名振古所靡 克思晦藏研經訂史 比躡臺端 國適不競 累貢忠懇辭嚴義正 逖彼西塞猶自激仰 喪亂既夷 聖主在上

優容耆喆收召賢儒 唯茲大義乃深乃扶 公在其間歛若無爲 時進一言亦豈無裨 于
以寵之世主文盟 聞 命祇懼矣趨循墻 事或非意展轉愈院 按覆如法無一不白 望
諸荊璧何有磨磷 司法秩宗位望並臻 庶幾終始先人武添 朝宗之麓山峙水湛 我銘
大石雅味是飾 百世在後過者之式
崇禎紀元後七十六年癸未八月 日立

(비문전재이기; 가평문화원장 신일균)

禮贊新書亦提學贈

有明朝鮮國王正憲大夫禮曹判書
正憲大夫提學憲文館大提學知義禁府奉教館成均館學士五衛總德府都監管同知
大夫攝政府右議政兼領
奉教館學士文廟李公紳道群銘并序
贈大匡輔國公孫

拔大宗伯大學士延安公諱 相宣威節節肅肅 皇朝嚴宗初元中 謁聖文科第四名實我 仁祖大正八年也時大父文忠公方任滿撥文忠公
 請公由學士出守南陽府公平甫十七始 國朝以來所未有一世魁梧之乃公以才手萬料為不吝過不杜一切門門讀經史二公而而成之雅聞有樞密王堂之選皆不顧也居五歲始拜稅工修胎罔至春秋慶典轉時兵會佐部刻修換而手拜百官料論不憚者近五言國事文典異特甄拔人才以
 院翰苑王堂之選皆不顧也居五歲始拜稅工修胎罔至春秋慶典轉時兵會佐部刻修換而手拜百官料論不憚者近五言國事文典異特甄拔人才以
 論後崇其在部者三可調叙 上有嚴吉公引進仍請大書發大權任之 批以留倉量處乃平白 殿下量處之際徐當渡河而中 出斯正殿發給
 眉目熟讀戰守之策毋誤機 上亦不拘時已年任廣役而尚事泄步公言如此移將撰閣清檢上到梓陳破秘書務誠育之預轉叙典錄長尹公 殿下轉敘典錄長尹公
 煌請節補請司及外方正 補軍需常朝廷托以催揮欲通商公慷慨倡議手執司諫耶太和而不罷公又將至順署職屬俗弊耽耽乃 皇朝平靜
 查裁嚴辭明片奏論八方裕泰 上朝而誠時危為安之大機也曹公數月撥議紳士致為人道意舉措殷繁不數月取手職士民上 皇朝平靜
 差防控律注不得已也唐明法條仁都亦司明奉 上幸南漢公促 寓會閣將移江都乃夫人表臺津進海夫及執約者時方浩舟和法臣罷公名亦在焉 上特命速寬重臣
 移配濟原公銜恤流寓數千里猶能以理言諍何久受注之職仍竭力於聖賢徑傳先春臨唐唐書致致清留痛念時手憤鬱無聊聞或著文以見志雖
 閑系 有文靖公時為天官公遷入簪于濡澤比歸流直律校臣出言全提郡道文靖公憂服閣為科檢科會人移司諫蓋賜善以典修 閣學陞通議
 陪尋止監鎮城縣未幾棄歸而 仁祖搜移矣由王曹參議移同訓來古港左副奉禮禮曹參議選致院請留清徐金文忠公以補新化仍上疏言命
 說未 成物又登宗時時進言多失和平坦欠乞容之量且請少抑 孝恩保恭聖躬以訓脅下心當意錄焉 獲抄送中教口頃跪于喜嘉而有傳益
 上自在得即知公賢被 簡餉如此公拜謝進曰目今天使孔林率機機測所恃者 聖明月同垂清而出時自難將因此使送德於清諸賢然也移曰
 兵曹參議大司諫諫論鎮空氏心主道繼請嚴明職法以振綱綱還承承有疏陳洪茂憤不宣以論事政謹 上印賜對慰諭由刑曹參議復陳與清自
 惡逆被持持主職聖善善降降副程 上諭遣月堂上德法條陳現吏多和之策移都示有請中明舉主進上法卷大司或兼同知義禁府主科大司憲等
 吏有舍路者治不耶掌令徐元龍竟之特受究其賄者公謂是當使禁吏是幅歐茲致為九便授公有秋祭作之 上果入其請 命劉職主與叙波兵
 曹參判克判竹赴燕山時雪滿然流 命道拜 兵同知 經廷禁官臣持今行需假假中邪勢大異前日也 命詳查憲探賊情 院之由吏曹參判
 成長為有寄侍 任望 士欲以王安石誤閣降之天數公曰此恐不難知如宋者豈可以有為值值金固也當怪不能拔復中承誠可恨也時講請得代

司議

事。上曰內修庶法可以外振方今急務在於得人心公對曰其要在於得人人才文武官而猶生於用時只是宜正能用之月然若推其本又在特科友張仲程尤不可不念上稱善上志於規恢公之前歲進言乃知此意雖文館提學陳長正堂亦嘗錄歷堂上與修仁祖嘗錄出為系幾道觀公察後還拜監銓時上銳意者為道志山林儒賢推先齊宋公時烈天官宋公恭諱公自助公上憐心相與朝野稱之先是尹鐸以布衣召為處公心不甚喜引文忠公見欺於其先人事曰此務成父子繼至是宋公欲徇外議起七階進聞公又力言不可宋公不聽及後鑄敗人多服公先是見宋公幾道無兩館大樞公問學公間命懋然臨臨官臣祖在宣廟朝幸以父老知選至於懋世世國臣父上嘗憂懋況臣安敢當上幸不已後知不許公難決謝其心未嘗言官一月安也趙判書綱欽曰韓矢衛至此古所未聞事公其賢矣孝宗拜避差政殿都監堂上事晚隱喜其降液拜在筵累辭禮曹復辭父衛差朝公自含家世諱貴聲汪兄弟皆宦家韓由是一臂力辭清要馬言已言季之異以全羅米使事宋肅載來于船並送亟於所落站拿問允之先是宋肅言官退年已責不充判公異之使傳時任事云慮者亦不免遂同在書問其故云謂有遊歷上者傳言初不料其禍今觀對內果用公名為應立職就捕探密言訟到謀斬南乃利祿徒配時公掌錄孝宗實錄及在引羅提敘官李公景典以為憂詰詢商堂處之上曰事果若真有請托官肯轉送其書於應差

그림 X-1 이일상 신도비 (좌측면 앞면)

